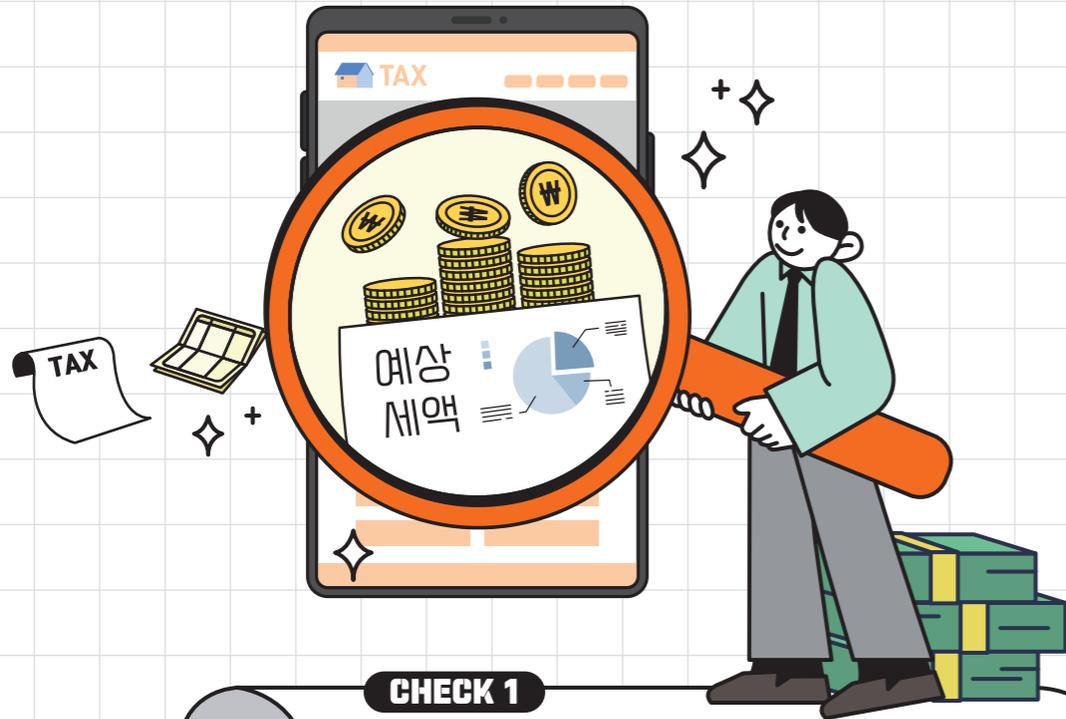


받을까, 더 낼까? 똑똑한 연말정산

정신없던 연말이 지나고 활기찬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근로소득자의 월급은 아직 한 해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연말정산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곧 다가오는 직장인 연말정산의 달을 맞이하여 똑똑한 연말정산 방법을 알아본다.



CHECK 1

2022년 중도 이직자라면?

2022년도에 중도 이직한 사람이라면, 퇴직한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현재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퇴사한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근로소득만 신고되어 향후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세후 연봉으로 계약하는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자가 자신의 연말정산에 소극적인 편이라 퇴사한 회사의 서류 누락이 흔히 발생한다.



글. 이동주
- '세무회계 문' 대표 세무사
-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해설위원
- 한화비즈메트로 세법 강사

CHECK 2

홈택스 자료 외 추가로 챙겨볼 꿀팁!

안경 및 콘택트렌즈(모두 시력보정용)와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의료기기 등을 구입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가 된다. 또한 연간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산후조리원 비용(한도 200만 원)과 출생신고 전후로 아이의 주민등록 없이 지출된 병원비도 공제 대상이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입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교육비 항목에서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 또는 체육 시설의 지출액(한도 300만 원)과 중·고교생 자녀의 교복비(한도 50만 원)도 확인해야 한다. 모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그런데 해당 사업체가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홈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지출처에서 영수증 등을 받아서 제출하면 된다.

정치자금기부금이나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같은 **지정기부금도 확인 대상이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곳의 기부금은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이때는 별도로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해야 한다. 과거에 한도 초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한 시점부터 10년 이 지난 해까지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만큼, 과거 한도 초과액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무주택 세대주가 매월 지급하는 월세도 세액공제 대상임에도 간소화 자료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연간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함께 제출하면 최대 15%(연 4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 보자.



CHECK 3

간소화 자료, 100% 맹신은 금물!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정말 편리한 시스템이다. 하지만 간소화 자료도 100% 확신해서는 안 된다. 해당 사업체가 제출한 금액을 국세청이 대신 취합, 정리해주는 차원에 불과하다. 1월 15일경 제공되는 간소화 자료는 1월 20일 전후로 확정되는데, 그동안 본인의 지출액 중 누락분이 있다면 국세청에 추가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1월 20일 이후 확정된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